

평가강령

KI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제정 2006.07

개정 2009.08

개정 2016.05

개정 2018.02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Korea Investors Service, Inc.

[목 차]

전문.....	1
I. 용어의 정의.....	2
II. 신용등급이란 무엇인가?.....	6
III. 규정.....	7
1. 신용평가과정의 질 및 공정성.....	7
A. 신용평가과정의 질.....	7
B. 사후관리.....	8
C.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	9
2.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10
A. 일반사항.....	10
B. 절차와 정책.....	11
C.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독립성.....	12
3. 일반투자자 및 발행사에 대한 책임.....	14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14
B. 기밀정보의 취급.....	17

4. 평가강령의 집행 및 공시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	18
5.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직원교육	19

전문

한국신용평가(주) (이하 “KIS”라 한다)는 1985 년 국내 최초의 신용평가사로 설립된 이래 질 높은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KIS 는 특정 채무증권 혹은 그러한 채무증권의 발행사의 신용도에 관한 정보와 의견을 신용등급 및 관련된 연구보고서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당사의 신용등급은 상대적 신용 손실, 즉 채권의 부도 가능성 및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손실 정도에 관한 예측 의견이다.

오늘날 투자자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는데 KIS 는 투자자 및 기타 신용등급 이용자들이 정보를 선별하고 특정업체에 돈을 빌려주거나 특정발행사의 채무증권을 매수할 때 감수해야 하는 신용리스크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KIS 는 공식 신용등급을 전세계의 투자자들에게 동시에 무료로 제공한다.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시장의 이해와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KIS 는 본 평가강령을 채택하였다. KIS 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신용평가사인 Moody’s Investors Service, Inc. (“MIS”)의 자회사로서, MIS 의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을 바탕으로 본 평가강령을 제정하였다. 따라서 본 평가강령은 실질적으로 MIS 의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과 유사하다.

KIS 는 본 평가강령을 통하여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들과 발행사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며, KIS 가 발행사로부터 제공받는 기밀정보를 보호하고자 한다. KIS 가 제공하는 신용등급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장은 이러한 신용등급의 속성과 한계를 주지해야 한다. KIS 는 아래 사항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 평가방법론
- 신용평가 정책
- 전반적인 과거 실적

본 평가강령 및 이와 관련된 정책은 KIS 의 공식 홈페이지인 www.kisrating.com 에 게시되어 있다.

본 평가강령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용평가과정의 질과 공정성
-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 일반투자자 및 발행사에 대한 책임

- 평가강령의 집행 및 공시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
- 기업지배구조, 리스크관리 및 직원교육

본 강령은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문본과 영문본이 상치되는 경우 국문본이 우선한다.

I. 용어의 정의

본 평가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관련 문서

1. “IOSCO 행동규범(IOSCO Code)”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이하 “IOSCO”)이 2004년 12월 23일 발표한 후 2008년 5월 및 2015년 3월에 개정한 Code of Conduct Fundamentals for Credit Rating Agencies 를 지칭한다. 이 행동규범은 세계 각국의 증권감독기관, 신용평가기관, 발행사 및 여타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공동노력을 통해 제정되었다. KIS 는 IOSCO 의 행동규범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2. “IOSCO 원칙(IOSCO Principles)”은 세계각국의 증권감독기관들이 제정하고 2003년 9월 25일 공표한 광범위한 원칙을 의미한다. IOSCO 행동규범은 IOSCO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다. KIS 는 IOSCO 원칙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였다.
3. “KIS 평가강령” 혹은 “평가강령”(KIS Code of Professional Conduct)이라 함은 KIS 의 신용평가 사업에 관한 본 평가강령을 의미한다. 본 평가강령은 KIS 와 KIS 직원의 업무수행에 적용된다.
4. “업무행동강령”은 KIS 가 채택한 행동강령이다

직원의 구분

1. “직원”이란 지위를 불문하고 KIS 에서 근무하는 개인(파견직 포함)을 의미한다.
2. “애널리스트”라 함은 신용평가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신용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직원을 의미한다.
3. “경영진” 혹은 “관리자”라 함은 인사관리에 관한 책임을 지는 직원을 의미한다.
4. “평가인력”이란 (1) 애널리스트, (2) 신용평가에 참여하는 인력, 그리고 (3)신용평가서비스 관련

절차, 방법론 혹은 모델을 개발, 검토, 승인하는 평가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평가 인력의 정의는 내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만을 통해 평가절차를 지원하는 직원을 제외한다.

조직 구조

1. “KIS”는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Korea Investors Service, Inc.)다. KIS 는 미합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용평가기관 Moody’s Investors Service, Inc.의 자회사다.
2. “평가정책부서(Credit Policy Group)”는 각종 채권 및 발행사에 대한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부서와 분리되어 있는 내부조직이다. 이 부서의 총괄책임자는 CCO(Chief Credit Officer)이며 CCO 는 KIS CEO 에게 직접 보고한다.

평가정책부서의 주요 업무로는 KIS 등급 퍼포먼스에 대한 리서치, 평가방법론 및 모델에 대한 검토와 승인, 평가 그룹의 주요 정책 및 관행을 결정하는 내부 위원회의 감독 등이 있다.

평가 정책 및 관행을 결정하는 내부 상시위원회인 평가정책위원회는 새로운 평가방법론 혹은 기존 평가방법론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다.

3. “준법감시부서(Compliance Department)”라 함은 KIS 및 직원들이 본 평가강령에 규정된 정책 과 절차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의미한다.
4. “영업부서”는 KIS 내에서 영업활동(Sales and Marketing)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영업활동 이라 함은 신용평가서비스와 관련한 의뢰 및 계약(약정), 수수료 협의 및 책정, 세금계산서 (invoice) 문의 및 발급, 그리고 고객별 수수료 또는 특정 거래처별 매출과 같은 영업관련 정보 및 이와 관련된 대내·외적인 논의, 회의 또는 이메일 등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말한다.

제공 서비스 및 상품

1. “신용등급”이라 함은 어떤 기관, 채무증권, 이에 준하는 증권, 신용공여 또는 그 발행사의 장래 의 상대적 신용도에 대한 KIS 의 현재시점에서의 의견을 의미한다. KIS 의 신용등급은 평가위원회 를 통해 결정되며 자체 등급체계에 의거하여 표시된다.

2. “무의뢰평가”라 함은 피평가사의 평가의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IS 가 실시한 평가를 의미한다.
3. “불참여평가(不參與評價)”라 함은 KIS 가 발행사에 대해 향후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발행사가 이를 거절(명백히 거절의사를 표명 또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거절)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신용평가를 의미한다.
4. “신용등급공시(Credit Rating Announcements)”라 함은 신규등급 부여, 기존 등급의 변경 또는 유지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문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한다..
5. “신용평가 서비스(Credit Rating Services)”라 함은 신용등급 및 Outlook, Watchlist 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를 의미한다. 신용평가 서비스는 기타 부수서비스를 제외한다.
6. “기타 부수서비스 (Other Legally Permitted Services)”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국내 법규에 의거 KIS 가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 중 신용평가 서비스가 아닌 것을 말한다
7. “Rating Action”이란 신용등급 신규부여, 유효 등급에 대한 상향/하향조정(부도등급으로의 조정 포함), affirmation 혹은 등급의 철회를 의미한다.

기타

1. “발행사”란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해당증권을 발행 또는 보증하는 법인(entity)이나 증권의 기재 신용을 달리 보장하는 법인(entity)을 의미한다.
2. “기밀정보”란 신용평가과정과 관련하여 발행사 또는 그의 수권받은 대리인이 KIS 에 제공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의 소유권이 정보제공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격상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문서상으로 명시한 정보를 의미한다. 단, “기밀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a) 이미 알려진 정보

(b) 발행사 또는 그의 대리인이 공개하기 전에 기밀유지조건 없이 KIS 에게 제공된 정보

(c) KIS 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발행사에 대한 기밀유지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제 3 자로부터 제공된 정보 혹은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제 3 자로부터 기밀유지조건 없이 KIS 가 제공받은 정보

(d) KIS 가 기밀정보를 참조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e) 취합 또는 변형되어 어떤 개별 발행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정보

(f) 공시 가능성에 대해 발행사 또는 그의 계열사 혹은 대리인이 문서의 형태로 승인한 정보

3. 본 평가강령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이라 함은 KIS 의 증권거래에 관한 내부정책에서 “예외”로 지정된 아래와 같은 증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a) 광범위하게 분산투자된 개방형의 뮤추얼 펀드 및 상장지수펀드(exchange-traded funds)에 대한 보유지분 또는 그의 파생증권

(b) 직원 또는 직원의 가족들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백지신탁”에 대한 지분증권.

4. “수수료 협상”이란 신용평가 수수료와 관련된 협상 및 최종 수수료 결정에 이르기까지 진행된 대내·외적인 논의 혹은 연락(correspondence) 등을 의미한다.

5. “피평가사”란 KIS 에게 신용평가를 받았거나, KIS 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증권을 발행하거나, KIS 가 신용평가서비스를 진행중인 법인(entity)을 말한다.

II. 신용등급이란 무엇인가?

신용등급은 어떤 기관, 신용공여(credit commitments), 채무 및 이에 준하는 증권의 장래의 상대적인 신용위험에 관한 현재 시점에서의 KIS의 의견이다. 신용위험이란 만기가 도래한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위험 및 부도 발생시 예상되는 금전적인 손실이라고 정의한다. 신용등급은 유동성 위험, 시장가치 위험, 가격 변동성과 같은 여타의 위험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신용등급은 현재 또는 과거 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등급은 투자자문 또는 금융자문을 의미하지 않으며, 특정 증권을 매수, 매도 또는 보유하라고 권유하는 것도 아니다. 신용등급은 특정 투자자에게 어떤 투자가 적합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다. KIS는 각각의 투자자가 매수, 매도 또는 보유를 고려중인 각 증권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평가할 것이라는 기대 및 인식하에 신용등급을 공시한다.

KIS의 신용등급은 KIS가 판단할 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출처로부터 KIS가 획득한 정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출처에는 발행사 및 이들의 대리인 및 자문인(예를 들면 회계사,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등이 포함되지만 이밖에 다른 출처도 더 있을 수 있다. KIS는 발행사 및 이들의 대리인이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전제 하에 신용평가를 수행한다.

KIS는 신용평가 과정에서 제공받거나 취득하는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사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을 뿐 아니라 실사를 하지도 않는다. KIS는 그러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정보가 완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KIS는 신용등급을 부여함에 있어 당해 신용등급 및 이와 관련된 보고서에 반영되었거나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적시성을 보증하거나 확약하지 않는다.

KIS는 신용평가과정에서 발행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KIS는 평가를 의뢰한 업체와 신탁의무를 지는 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있지 아니하며, 평가대상업체에 대해 자문역할을 하지도 않는다. KIS는 평가대상 증권에 대하여 어떠한 구조가 제안되었을 경우 그러한 구조가 신용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 언급할 수는 있지만 그 증권의 실제 구조설정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KIS는 신용등급, 평가의견, 논평 및 기타 모든 관련된 출판물의 내용 편집에 관하여 완전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이는 KIS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견 발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KIS는 내부정책과 절차에 따라 언제라도 신용등급을 유보, 수정, 하향 또는 상향 조정, 철회하거나 Watchlist에 올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KIS는 평가실시 여부 및 등급공시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및 관련 정보 혹은 보고서를 공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도 가지고 있다. 단, 혼한 경우는 아니지만 계약에 의해 등급공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래 3.4 항을 참조)

III. 규정

1. 신용평가과정의 질 및 공정성

IOSCO 원칙에 기재된 바와 같이 KIS는 채무증권 혹은 이에 준하는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사들의 상대적인 신용도에 관한 예측의견을 제공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채무증권의 발행사와 잠재적인 투자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A. 신용평가과정의 질

- 1.1 신용등급은 장래 신용도에 관한 확률적 의견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별 신용등급의 성과측정은 각각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신용등급이 KIS가 사전에 확립한 평가절차에 부합되게끔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진다. 가능한 경우 전체적인 신용등급의 성과평가는 사후적으로 통계적 관점(부도율, Accuracy Ratio 및 등급의 안정성)에서 이루어진다.
- 1.2 KIS는 엄밀하고 체계적인 평가방법론을 개발하여 유지한다. 가능하다면 그러한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결정된 신용등급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시계열 자료에 근거한 객관적 검증을 실시한다. 평가정책부서는 평가방법론 및 평가절차의 적절성과 완전성을 점검하고 평가정책위원회는 평가방법론 및 평가절차에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승인할 책임을 진다.
- 1.3 신용평가 시 애널리스트들은 적절한 경우 KIS의 평가방법론에 의거해 발행사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KIS의 애널리스트들은 KIS가 개발한 평가방법론을 일관성 있게 적용한다.
- 1.4 신용등급은 애널리스트 개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신용등급은 KIS의 담당 애널리스트 및 평가위원회의 구성원이 알고 있고 평가와 유관하다고 믿는 모든 정보를 반영하되 KIS가 기 공시한 평가방법론과 부합되는 방식으로 반영하여 산출한다. KIS는 평가업무를 할당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때 분석대상 크레딧 유형별로 등급을 판정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애널리스트들을 배정한다.
- 1.5 KIS는 신용등급의 근거가 되는 내부자료를 보관 시 평가자료 보관에 관한 내부 정책과 관련 법률을 준수한다. KIS는 자료의 보관과 파기에 관한 정책과 통제수단을 도입, 관리, 시행한다.

- 1.6 KIS 와 애널리스트들은 발행사 또는 채무증권의 전반적인 신용도에 관해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포함하거나 오도할 수 있는 신용등급이나 보고서가 공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1.7 KIS 는 신용평가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투자한다. 특정 발행사 혹은 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새로 시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혹은 기존의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러한 신용평가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인력을 충분히 투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입수할 수 있는지도 역시 고려한다.

KIS 는 신용등급 부여시 사용하는 정보가 등급의 신뢰도를 확보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특정 구조화 금융상품의 과거 데이터가 제한적이라면 그 상품과 관련된 신용등급을 공시할 때에는 그러한 한계점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명시한다.

평가정책부서는 다음 역할을 수행한다.

- 1.7.1. 과거에 KIS 가 평가했던 구조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에 대한 신용평가의 수행타당성 검토
- 1.7.2 KIS 가 사용하는 평가방법론과 모델 및 그에 대한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한 정기적 검토
- 1.7.3 구조화 상품의 기초자산의 위험특성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해 기존의 평가방법론과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여부 판단

구조화 상품이 새롭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KIS 는 그 상품을 평가하기에 충분한 정보와 분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상품에 대해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 1.8 KIS 는 신용평가과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편견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B. 사후관리

- 1.10 KIS 는 신용등급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인력 및 재원을 할당한다. KIS 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모든 신용등급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갱신한다. 단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신용등급은 예외로 한다.

- (a) 해당 발행사 및 관계사의 신용도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 (b)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어떠한 Rating Action(여기에는 신용등급의 철회도 포함된다)을 취해야 할 필요성을 야기시키는 정보를 알게 되었을 경우, 관련된 평가방법론에 의거하여 해당 신용등급에 대한 Review 를 시작하며;
- (c) 상기한 Review 의 결과 필요하다면 해당 신용등급을 적시에 조정한다. 또한, 방법론의 제정 혹은 개정 시에는 해당 방법론 제개정이 유효한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간 안에 필요한 rating action 을 취한다.

가능한 경우, 신용등급을 사후관리할 때에는 누적된 모든 경험을 반영한다. KIS 의 평가기준 및 가정이 변경된 경우, 필요하다면, 변경된 내용을 최초 평가(initial ratings)와 사후평가(subsequent ratings)에 모두 적용한다.

- 1.11 KIS 가 최초 신용등급 결정과 사후관리에 별개의 분석팀을 사용하는 경우 각 팀은 각각의 기능을 적시에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KIS 는 또한 적절한 시기에 기존 신용등급을 모니터링하고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운영상의 유연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 프로세스 및 시장 동향을 검토한다
- 1.12. KIS 는 신용등급 공시자료 발표에 관한 정책과 통제수단을 도입, 관리, 시행한다. 신용등급공시자료는 발행사 또는 채무증권에 대한 공시 등급을 철회하는 경우를 포함한 Rating Action 을 발표하는 자료이다. 단, 평가대상 채권의 만기 도래, 발행사의 부도, 청산 또는 여타 유형의 정부관리체제 편입을 이유로 신용등급을 철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신용평가과정의 공정성

- 1.13 KIS 와 그 직원은 KIS 가 활동하는 모든 나라에서 KIS 의 활동을 규율하는 모든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 1.14 KIS 와 그 직원은 발행사, 투자자, 기타 시장참여자 및 일반대중에 대하여 공정하고 정직하게 대우한다.
- 1.15 KIS 는 소속 직원에게 정직성에 관하여 최고의 기준을 요구한다. KIS 는 어떤 개인이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그 개인을 고용하지 않는다.

- 1.16 KIS 와 KIS 의 애널리스트들은, 평가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는,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상관 없이, 특정 신용등급을 보장 또는 확약하지 않는다. 또한, KIS 와 KIS 의 직원들은 피평가사, 투자자, 혹은 다른 시장참여자들에게 신용평가서비스 및 기타 부수서비스 수주를 목적으로 잠재적 Rating Action 에 대한 약속을 하거나 협박을 가하지 않는다.
- 1.17 KIS 의 직원은 발행사, 차주(obligor), 주관사(underwriter), 스폰서(sponsor) 등에게 발행사나 차주나 발행사의 조직구조, 법적구조, 자산, 부채 혹은 기타 활동에 대하여 권고나 제안을 할 수 없다. 단, 본 금지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주 내에서 신용리스크 평가를 위해 직원이 (1) 당해 발행사 혹은 채무에 대한 특정 사실이나 특성 및 발행사(혹은 발행사의 대리인)가 제안한 수정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 및 (2) KIS 의 평가방법론이 발행사 및 채무에 적용될 때 신용평가에 미치게 될 영향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사 또는 그 대리인과 일련의 논의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
- 1.18 KIS 의 직원들은 법률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할 때 관련 법규나 본 평가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보고해야 한다. 관리자 또는 임원이 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준법감시부서는 이러한 보고를 받게 되면 대한민국의 관련 법규와 KIS 의 내부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직원들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KIS 의 웹사이트를 통해 익명 또는 비밀로 보고할 수도 있다.
- 1.19 KIS 의 직원이 법규 또는 본 평가강령의 잠재적 위반사항을 선의를 가지고 보고하는 경우 KIS 의 경영진은 다른 직원 혹은 회사가 신고한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것을 금지한다.
- 1.20 KIS 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
- a) 신용평가 컨설팅 서비스(rating advisory service) 제공
 - b) 증권 또는 MMF 상품 등을 주관하는 broker 나 dealer 활동

2. 독립성 및 이해상충 방지

A. 일반사항

- 2.1 등급 부여, 조정 및 철회 등 제반 Rating Action 을 함에 있어서 KIS, 발행사, 피평가사, 투자자 또는 기타 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효과(경제적, 정치적 또는 기타의 잠재적 효과)를 고려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

- 2.2 KIS 와 그 직원은 독립성과 객관성을 실질적으로는 물론 의견상으로도 유지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이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린다.
- 2.3 신용등급의 결정은 신용평가에 관련된 요소들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 2.4 KIS 의 신용등급은 KIS(또는 그 계열사)와 발행사(또는 그 계열사) 또는 그 이외의 자 사이에 비즈니스 관계가 존재하거나, 예상되거나, 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 2.5 KIS 는 자사의 신용평가 서비스 및 애널리스트들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여타 사업으로부터 업무상, 그리고 가능한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시킨다. KIS 는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거나, 그러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적절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절차 및 메커니즘을 마련한다. KIS 가 새로운 기타 부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부서와 먼저 논의한다. 기타 부수서비스가 의미하는 바는 본 평가장령 “I. 용어의 정의”에 기술되어 있다.

B. 절차와 정책

- 2.6 KIS 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부 절차와 메커니즘을 서면으로 제정한다:

신용등급 또는 신규 또는 변경 등급의 승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의

(a) 식별 및

(b) 제거 또는 관리 및 공개

KIS 는 신용등급 산정에 대한 대가를 발행사나 인수기관(underwriter)으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이해상충을 해소 및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였다.

- 2.7 KIS 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 문제를 공시할 때에는 관련 내용을 완전하게, 적시에, 명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시한다. 이러한 공시는 kisrating.com 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2.8 KIS 는 평가대상 업체와 체결한 보수약정의 일반적인 성격을 공개한다.

(a) KIS 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KIS 는 피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 서비스 혹은 기타 부수서비스 와 관련 없는 보수를 받지 않는다. 만일 KIS 가 피평가사로부터 신용평가

서비스 혹은 기타 부수서비스와 관련 없는 보수를 받게 된다면 신용평가 서비스 및 기타 부수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와 비평가 서비스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공시할 것이다

(b) KIS 가 특정 개별 발행사(issuer), 자산보유자(originator), 주간사(arranger) 또는 구독자(subscriber)로부터 받는 수입(계열사를 포함한다)이 KIS 연간 총수입의 10% 이상을 차지한다면 그 사실을 공시한다

2.9 증권거래에 관한 내부정책에 규정된 바와 같이 KIS 및 그 직원은 KIS 의 신용평가활동과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 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

2.10 KIS 로부터 피평가사 (일례로 정부기관)이 KIS 와 관련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감독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면 KIS 는 그러한 기관을 평가하는 업무에 감독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배정하지 않는다.

C.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독립성

2.11. KIS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보고라인과 이들의 보수체계를 정할 때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이해충문제를 제거하거나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a) 애널리스트는 자신이 (i)평가하거나 (ii) 주로 접촉하거나 (iii) 승인 혹은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는 발행사로부터 발생하는 수수료에 근거하여 보상받거나 평가받지 않는다.

(b) KIS 는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원들의 급여 정책과 그 관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당 정책 및 관행이 신용평가 과정 및 직원의 객관성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확인한다.

2.12 KIS 는 신용평가와 영업 업무를 분리한다. 평가인력은 수수료 협상이나 영업활동에 참여하거나 영업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는 평가수수료 체계에 대해 단순히 인지하고 있거나 언급하는 것은 수수료 협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업 부서 직원은 신용 등급 결정이나 모니터링 혹은 평가 서비스 제공 시 사용하는 모델이나 방법론의 개발 또는 승인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2.13 KIS 의 직원이 아래에 열거하는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KIS 의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핵심원칙”에 의거하여 특정 업체 또는 특정 채무증권에 대한 등급결정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a) 직원이 피평가사가 발행한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소유한 경우

(b) 직원이 피평가사와 관련된 업체의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되는 것처럼 간주될 수 있는 경우

(c) 직원이 최근에 피평가사에 고용되어 있었거나 기타 상당한 사업상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초래될 수 있거나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d) 직원의 가까운 친척(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형제자매)이 현재 피평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e) 직원이 피평가사 또는 관련된 업체와 어떠한 관계를 현재 갖고 있거나 과거에 가졌던 경우로서 이로 인해 이해상충을 초래할 수 있거나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2.14 증권거래에 관한 KIS의 내부정책에 따라 평가에 참여하는 KIS의 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은 자신이 신용평가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발행, 보증, 혹은 지원한 어떠한 증권이나 파생상품도 매수, 매도하거나 기타 거래에 참여할 수 없다.

2.15 KIS의 직원은 KIS 업무행동강령에서 명시적으로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KIS와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나 개인에게 금품 또는 혜택을 요구하거나 이들로부터 금품 또는 혜택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2.16 KIS의 애널리스트 또는 관리자가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적인 관계(가령 피평가사 또는 그 대리인의 직원과의 개인적 관계 등)를 갖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그러한 자신의 관리자 또는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에게 알려야 한다. KIS는 이러한 제보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에 근거하여 실질적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완화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17. KIS는 애널리스트 혹은 신용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여타 직원이 KIS를 퇴직한 후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거래가 있었던 발행사 혹은 금융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해당 애널리스트 및 직원의 과거 업무를 소급하여 검토하는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한다.

3. 일반투자자 및 발행사에 대한 책임

A. 등급공시의 투명성과 적시성

3.1 KIS 는 발행사, 채무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에 관한 Rating Action 을 가능한 한 신속히 공시한다.

3.2 KIS 는 채권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발행된 채무증권이나 혹은 그러한 채권을 발행하는 발행사에 대해서 Rating Action 을 취한 경우 이를 일반대중에게 차별없이 무료로 공시하고, 해당 채무증권이나 발행사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이러한 공시는 KIS 의 홈페이지 게시한다.

KIS 는 공시 신용등급에 대한 Rating Action 중 신용등급공시자료가 수반되지 않는 Rating Action 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3.3 KIS 는 구조화 금융상품의 발행사 및 자산보유자들에게 해당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시하도록 장려한다.

3.4 피평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리고 KIS 자체 판단에 따라, KIS 는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발행사 또는 채무증권- 자산유동화증권(관련 tranche 포함)에 대한 KIS 의 등급이 이미 공시되었다면 해당 신용등급의 변경 혹은 중단에 대한 후속 결정사항은 차별 없이 무료로 공시한다.

3.5 KIS 는 신용등급의 배포 및 철회에 대한 정책을 공시하고 그러한 정책에 변경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내용을 공시한다.

3.6 KIS 는 신용등급 공시자료에 다음을 명시한다:

(a) 가장 최근에 공시된 관련 신용등급 및 주요 action,

(b) 신용등급 결정 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평가방법론 혹은 평가방법론의 버전, 그리고 그 평가방법론에 대한 설명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KIS 는 해당 신용등급이 하나 이상의 평가방법론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이 단 하나의 평가방법론만을 검토할 경우 해당 신용등급의 여타 중요한 요인들을 간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신용평가 과정에서 고려한 여타 중요한 요인들 및 다른 평가방법론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를 명시한다.

- (c) 해당 신용등급 관련 주요 등급 논리 요지;
- (d) 주요 평가 가정/요인 및 주요 평가 가정/요인의 민감성 분석 요지;
- (e) 신용등급 산정 시 사용된 중대한 중요정보 출처; 및
- (f) 각 신용등급의 속성과 한계 및 피평가사, 차주나 자산보유자(originator), 혹은 평가대상 채무증권의 인수기관(underwriter)이나 주간사(arranger)가 제공한 정보에 대한 KIS 의 검증 여부.

신용등급공시자료는 KIS 의 홈페이지에 공시된 문서를 의미할 수 있다.

3.7 KIS 는 평가위원회 프로세스, 평가절차, 평가방법론에 관한 정보는 물론 발행사가 공시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정보와 크게 차이가 나는 재무제표가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과 신용등급 이용자들이 신용등급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KIS 의 등급체계(rating symbols and rating scales)는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있다.

- (a) KIS 는 구조화 금융상품에 대한 신용평가 관련 손실기대치 및 현금흐름분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하여 금융시장 전문가가 해당 신용등급에 대한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KIS 는 구조화 금융상품 신용평가과정에서 수립하였던 기본 가정조건이 변동될 경우 신용등급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일 것인지 그 민감도를 분석하여 공시한다.
- (b) KIS 는 모든 신규 및 기존 구조화 금융상품 신용등급에 (sf)부호를 삽입할 것이다. 해당 (sf) 부호는 KIS 의 모든 신용등급공시자료 및 리서치 보고서에 기재된 신용등급에 추가하여 표시한다.
- (c) KIS 는 신용등급의 속성, 한계, 투자나 기타 금융 의사 결정 시 신용등급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평가대상 증권 발행사 혹은 자산보유자가 KIS 에 제공한 정보에 대한 KIS 의 검증 여부를 명시한다. 이러한 정보는 신용등급이 무엇인가에 대해 투자자들과 신용등급이용자들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3.8 KIS 는 유관 법규상 요구되거나 가능한 경우 등급을 부여 또는 조정하기 전에 발행사에게 등급결정의 근거가 된 핵심정보와 주된 고려사항을 알려준다. 또한 KIS 는 발행사가 이전에는 입수할 수 없었던 정보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어떤 사실에 관한 오류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는 신용평가업무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발행사가 답변을 하는 경우 KIS 는 이를 충분히 검토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신용등급을 부여 또는 조정하기 전에 발행사에게 위와 같은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 KIS 는 이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발행사에게 통지하고 통지가 지연된 이유를 설명한다.

3.9 특수한 사정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KIS 는 발행사가 등급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의제기를 할 때에는 발행사나 KIS 가 이전에 확보할 수 없었던 정보를 근거로 해야 한다.

3.10 신용평가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신용등급의 총체적인 성과에 대해 가장 잘 판단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IS 는 등급별 부도율, 등급 전이율, 그리고 기간별 성과지표를 공시한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러한 정보는 신용등급의 performance 에 관해 검증가능 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과거 정보를 체계화, 구조화, 표준화시킴으로써 금융 전문가들이 신용평가 기관들의 performance 를 상호 비교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규제 당국이 KIS 에 요청하는 경우, KIS 는 규제 당국이 신용등급 performance 에 대해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에 등급 관련 데이터를 제공한다.

3.11 발행사가 신용평가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투명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KIS 는 내부정책에 의거하여 해당 평가가 “불참여평가(不參與評價)”임을 명시한다.

3.12 KIS 는 최근 무의뢰평가를 수행한 적은 없으나 신용평가에 관한 의견발표자라는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두가지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장래 무의뢰평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i) 무의뢰평가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있거나 무의뢰평가를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익이 증진되는 경우

(ii) 신용도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있으며 등급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KIS 는 무의뢰평가 실시 후 최소 1 년 동안은 해당 발행사에게 분석업무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3.13 KIS 는 평가방법론 및 그와 관련된 주요한 평가관행, 평가절차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언론보도 혹은 kisrating.com 에의 게시를 통해 공시한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KIS 는 이러한 변경사항을 평가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시장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KIS 는 평가방법론 및 그와 관련된 평가관행, 평가절차를 수정하기 전에 신용등급이 어떤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3.14 KIS 는 신용등급에 관련된 연구조사의 수행자로서 발행사, 채무증권, 기타 이에 준하는 증권 등에 관하여 명료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고품질의 연구조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연구조사의

결과물을 판매하는 업무는 평가업무 및 연구조사업무와 분리함으로써 부적절한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본 평가강령의 다른 부분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기밀정보 및 KIS의 장래 Rating Action에 관한 비공개 정보는 유료구독회원 또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다.

B. 기밀정보의 취급

3.15 KIS 및 그 직원은:

3.15.1 발행사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은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3.15.2 발행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등급 공시자료, 연구조사 모임, 투자자 혹은 다른 발행사 등과의 대화를 통해 기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15.3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a) 기밀정보를 명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기밀정보를 반영한 신용등급 또는 평가의견을 공표하거나;

(b) 신용평가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기밀준수협약을 체결한 제 3자 혹은 대리인을 이용하거나;

(c) 관련 법규에 따라, 혹은 정부기관이나 정부당국의 요청에 의해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d) 해당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 3자에게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지 아니한다.

3.16 KIS는 신용평가업무 수행에 관련된 목적으로만 기밀정보를 이용한다.

3.17 KIS는 KIS에 속하거나 KIS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및 기록을 사기, 절도 및 불법사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통제수단을 유지하고 시행한다.

3.18 증권거래에 관한 KIS의 내부정책에 따라 KIS의 직원들이 발행사에 관한 기밀정보 혹은 주요 비공개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발행사의 증권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3.19 KIS 직원들은 증권거래에 관한 KIS의 내부정책을 숙지하고 동 정책의 준수 여부에 대한 진술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

- 3.20 KIS 직원들은 예정된 Rating Action 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피평가사 혹은 그의 지정된 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3.21 KIS 에 제공된 기밀정보 또는 비공개정보는 KIS 직원들 사이에서도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유한다. KIS 의 직원들은 KIS 에게 제공된 기밀정보 혹은 비공개정보를 KIS 의 계열사 직원들과 공유하지 않는다. 단 그러한 직원이 Rating Service 와 관련한 KIS 의 대리인 또는 contractor 역할을 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며 적절한 기밀유지약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22 KIS 의 직원들은 본 평가강령 3.15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권거래 목적 또는 기타 목적으로 기밀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하지 않는다.
- 3.23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 혹은 정부기관 또는 정부당국이 합법적으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KIS 의 신용평가과정에서의 내부심의내용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되며 KIS 외부인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단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need-to-know)와 적절한 기밀유지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평가강령의 집행 및 공시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정보제공

- 4.1 KIS 의 경영진은 본 평가강령의 이행 및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 KIS 이사회는 이와 같은 책임을 감독한다.
- 4.2 본 평가강령의 규정들은 IOSCO 원칙 및 IOSCO 행동규범에서 도출된 것이다. 그러나 KIS 는 KIS 의 사업방식과 관행 및 국내 감독기관이 채택한 법률에 좀 더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평가강령의 조항을 다소간 수정하였다. 그러한 수정 사항들은 평가강령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본 평가강령과 IOSCO 행동규범(IOSCO Code) 간의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KIS 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평가강령 실행보고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 4.3 KIS 는 본 평가강령에 포함된 주관적 기준을 준수함에 있어 신의성실로 노력한다.
- 4.4 KIS 는 자사 홈페이지 (www.kisrating.com) 내에 (1) 평가강령 (2) 신용등급 부여시 사용하는 평가방법론 및 (3) 과거 신용등급 performance 및 (4) 본 강령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을 공시한다.
- 4.5 KIS 준법감시부서는 시장참여자 및 일반대중이 제기한 불만(기밀유지조건으로 제기되는 불만 포

함)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는다.

KIS 준법감시부서는 모든 관련 불만을 검토하고 추가적인 상부보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5.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및 직원교육

5.1 KIS 준법감시부서는 본 평가강령의 절차 조항 준수 여부 실태를 점검한다. 준법감시부서는 KIS의 평가 업무와는 독립적인 보고라인을 따른다. KIS의 준법감시인 뿐 아니라 KIS 준법감시부서의 그 어떤 직원에게도 다음의 사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1) 신용평가 수행; (2) 평가방법론 또는 모델 개발에 참여; (3) 마케팅 또는 세일즈 업무 수행; 또는 (4) KIS 준법감시부서 직원을 제외한 기타 직원의 보수 수준 결정 과정에 참여. 또한 KIS 준법감시부서의 모든 직원은 준법감시부서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점과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이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기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KIS 준법감시부서에서는 준법감시인이 이와 같은 요건의 이행 및 집행 책임을 맡는다. 본 정책의 위반 행위를 인지한 직원은 해당 위반 사실을 KIS 준법감시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5.1.1 준법감시인의 보수는 KIS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별도로 운영하며, 준법감시인과 KIS 준법감시부서의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고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5.1.2 KIS는 준법감시인으로 하여금 KIS의 평가 업무 관련 정책 및 절차에 대한 전년도 준수 실태(KIS 평가강령, KIS 이해상충규정 등의 중대한 개정 포함)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연간 기밀 준법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나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간 준법감시보고서에 관련 증권법 준수실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5.2 KIS는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및 관리한다. 당해 프로그램의 이행 및 감독을 위해 1인 이상의 적절한 담당직원을 지정한다.